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이성민[6574] / 보험팀장 백영기[6581] / 팀원 박수연[6587]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5309호
시행일자 2021. 03. 15.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제 목 **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**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083호(2021.03.15.)

3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,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개정사항 :
- 질병군 적용 제외 기준 조정(신생아 범주 조정)
- 제왕절개 분만 수가 개선

나. 시행일 : 2021. 3. 16. 부터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